

대 법 원

제 1 부

결 정

사 건 [REDACTED] 아동반환청구(헤이그협약)

청구인, 피재항고인 [REDACTED]

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[REDACTED]

국적 미국

대리인 법무법인 동진

담당변호사 정진경

대리인 변호사 민지원

상대방, 재항고인 [REDACTED]

주소 용인시 [REDACTED]
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김은진, 김성우, 최정지, 권효진

사 건 본 인 [REDACTED]



원 심 결 정          서울가정법원 2021. 10. 14.자 [redacted] 결정

주 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이 사건 재항고는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7조,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2. 17.

재판장 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 오경미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 박정화



주 심 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 김선수



대법관

노태악



열람용

# 정본입니다.

2022. 2. 17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최은경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